[2022-27] ○○○ 이의신청 요약 ['22. 8. 19. 결정]

사실 관계

○ 2000.00.00 신청인, 경상북도 ●●시 ●●면 ●●리 ●●●●-●●번지 외 ●필지 토지 매매 취득 후 **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※**에 따라 취득세의 75% 감면받음

※ (법§58조의3①-1) 창업중소기업이 창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.

○ 2000.00.00 처분청, 신청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(3년)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·고지(추징)

○ 2000.00.00 신청인, 이의신청 제기

쟁점 사항

○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(3년)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
신청법인 주장

○ 신청인은 제조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즉시 착공하였으나, 자금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었고, 공장설립 변경 과정에서 처분청과의 협의가 늦어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것이며, 의도적으로 공장 건축을 지연시킨 적이 없는바,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.

종합판단 : 기 각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**같은 법 제7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**

○ **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(대법원2008두3319 판결),**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'직접 사용'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, 신청인은 유예기간 내에 **건축물을 준공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,**

○ 신청인의 사업계획서 상 준공예정일은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●●년 ●월 준공예정이었으며,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점,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및 건축 변경신청은 내부적 사유에 해당하며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는 점,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골조 공사까지 진행된 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.